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5. 16 선고 2021가단630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3. 28.

판 결 선 고 2023. 5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.5㎡를 철거하고,
같은 선내 16.53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4. 6. 15.경 서울 서대문구 D 토지(이하 '원고 토지'라 한다)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, 같은 해 2004. 7. 2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 토지 옆의 서울 서대문구 E 토지(이하 '피고 토지'라 한다)는 F, G, H, I의 소유였는데, 2014. 9. 17.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. 11. 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2015. 9. 17.

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계복원측량 성과를 토대로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다가구주택(이하 '피고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 2016. 9. 8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는,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신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 건물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.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세아

별 지 (도면)



